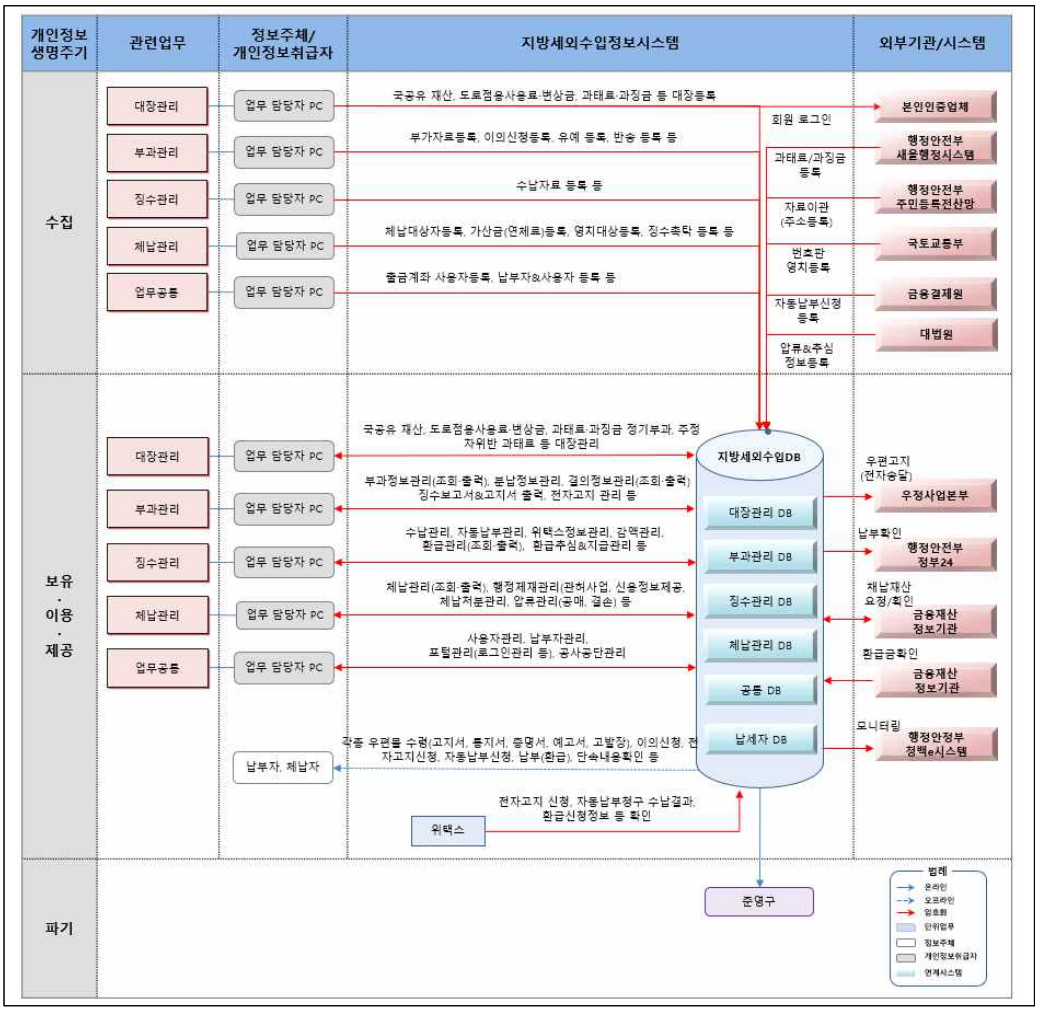
#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부산진구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㈜씨에이에스</td><td>평가<br>기간</td><td>2026.09.01<br>~<br>2026.09.30</td><td>평가<br>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<br>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<br>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<br>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<br>☑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<br>변경 일정</td><td>2026. 1. ~<br>2026. 12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<br>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·징수·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<br>•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<br>• 신규 구축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</td><td>추진예산</td><td>102,650,562천원<br>(VAT 별도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행정안전부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2">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<br>☐ 변경(고도화)<br>☑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<br>- 지방세외수입 부과, 징수, 수납, 체납관리 등 내·외부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DB, SW 등 변경사항 반영<br>-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,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및 정보연계 확대<br>• 세외수입 관련 법·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<br>-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·제도 개정에 따른 DB, SW, 코드 변경 적용<br>- 법개정 관련 응용SW 개선 및 지방세외수입 인프라(HW·상용SW) 증설<br>-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조직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변환 등 지원<br>•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<br>- 지방세외수입정보화 발전협의회, 현장방문, 사용자 교육, 자치단체 요청 등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SW 반영<br>- 장애예방 및 대응, 시스템 연계, 자료이관 등 기술지원<br>- 지방세외수입 업무별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운영지원 등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<br>변경내용</td><td colspan="6">해당하지 않음</td></tr>
</table>

| | 파일명 | 정보주체 수 | 개인정보 항목 | 제3자 제공 | 개인정보 처리 목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개인정보파일개요 | 세외수입 감액관리 | 28,935 |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 국토교통부 | 세외수입 감액관리 |
| | 세외수입 결손관리 | 164,091 |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 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, 건설공제조합, 대법원, PG사(VAN),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세청, 관세청, 한국신용정보원 | 세외수입 결손관리 |
| |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| 7,935 |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예금주정보(계좌번호, 예금주명) | 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, 행정안전부 | 세외수입 과오납처리 |
| | 세외수입 부과관리 | 1,298,231 |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, 우정사업본부 | 세외수입 부과 및 관리 |
| | 세외수입 수납관리 | 1,183,256 |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 금융결제원 | 세외수입 수납처리 |
| | 세외수입 압류관리 | 490,314 |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 | 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, 건설공제조합, 대법원, PG사(VAN),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세청, 관세청, 한국신용정보원 | 세외수입 압류관리 |
| | 세외수입 체납관리 | 655,426 |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 | 세외수입 체납관리 |

| | |
|---|---|
|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| 1. 개인정보 처리 흐름<br>-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, 징수, 수납, 체납관리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<br>- 부산진구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/징수/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<br>-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|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<br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향평가기준</td><td>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</td><td>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<br>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‘22.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.<br>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기준</td><td>-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 보호법령”을 반영<br>-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을 반영<br>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<br>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</td><td><u>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</u><br>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(사용료), 제72조(변상금의 징수)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제22조(사용료), 제81조(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<br><br><u>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</u><br>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(준영구)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<br>- 문서체계의 불일치로 인해 내부관리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소홀 및 관리·감독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(1.2.1)<br>-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점검 항목의 누락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자체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며, 이로 인해 관리적·기술적 취약점이 방치되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(1.2.2)<br>-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누락됨으로써, 계획된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의 실질적인 이행이 불가능해지고, 결과적으로 보안 인프라 공백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(1.2.3)<br>-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내 비상연락망 누락으로 인해 사고 인지 시 신속한 내부 보고 및 유관기관 통지·신고가 지연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대응 체계가 마비될 위험이 있으며,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어 피해 확산 및 기관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(1.3.2)<br>-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공개 내용이 미흡할 경우,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법규위반 발생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(2.3.2)<br>- 지원 종료(또는 업그레이드 누락)된 구형 운영체제 사용으로 인해 신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공백이 발생하고, 이를 악용한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증가함(4.5.2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</td><td>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</td><td>- 내부관리계획 보완(1.2.1)<br>-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점검 보완(1.2.2)<br>-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보완(1.2.3)<br>-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보완 및 모의훈련 실시 권고(1.3.2)<br>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 공개(2.3.2)<br>- 운영체제 미전환 업무용PC 업그레이드(4.5.2)</td></tr>
<tr><td>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</td><td>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 공개 확인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결과</td><td>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4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.<br>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</td></tr>
</table>

| | |
|---|---|
| |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.<br>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5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.<br>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6개 항목을 제외하고 20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.<br>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 |